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기관경고

[제 목]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개최 등 자료 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산악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산악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산악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2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총회의 소집),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제15조(이사회 소집),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나 **명의 재적대의원을 두고 **명의 출석대의원의 서명으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경기도등산교육원의 대의원 자격에 대한 서류가 확인할 수 없었고 대의원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원 자격이 있는 시군산악연맹 중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고 하였을 때 재적대의원의 수는 **개 단체로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대의원총회가 어려웠던 것은 알고 있으나 비대면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출석대의원을 과반수 맞춰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성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산악연맹회장은

연맹의 2020년도 대의원총회 개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향후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대의원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에 따른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결의를 실시하고 이를 본회 공정감사실 및 종목육성팀에 이를 보고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맹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산악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산악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산악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및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의거, 규약 및 기타규정을 절차에 맞게 의결하여 제·개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규약」 제50조(사무국 운영 등), 제52조(정관변경), 제53조(규정 제·개정 등)에 의거, 연맹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을 참고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및 총회 의결 등을 거쳐 규정 제·개정을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연맹은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가. 연맹 「규약」 관리 미흡

연맹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제1항에 따라, 본회 각종 규정을 참고하여 연맹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맹은 20**.**.*. 본회를 통해 규정개정 승인을 득 한 후 20**.**.*. 개정하였으나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20**년도 **월 개정은 본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기타규정 관리 미흡

연맹은 ◎◎◎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규정이 있는 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이 다수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산악연맹회장은

연맹의 규약을 본회 종목육성팀과 협의하여 개정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본회 및 대한산악연맹의 기타규정을 확인하여 기능과 역할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종목의 특성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산악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산악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은 조직 운영,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맹 「규약」,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맹 행정의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은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회계규정」 제2조(적용)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정한다고 되어있다.

연맹은 모든 예산 집행 시 본회 「회계규정」 제42조(지출원인행위)¹⁾, 제43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²⁾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5항³⁾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 1) 제42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제43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회장은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소관부서에 설치된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 3)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방법)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달성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를 통해 집행의사를 결정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결의를 통해 지출하는 등 집행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연맹은 보조금 집행시 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증빙서류를 관련 법률이나 지침에 따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가. 지출원인행위 미실시

연맹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 증빙이 되는 서류를 근거로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한 후 지출결의서를 통해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20**년도 실시된 ○○○○○에서만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결의가 이루어지고 다른 보조금사업 및 자체예산에도 지출원인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었다.

나. 보조금 정산서류 분실

연맹은 20**년도 경기도●●●●●의 서류 일체를 분실하고 제대로 된 회계서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별도로 PC를 통해 저장해 둔 정산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업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알고 증빙 서류를 잘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다.

다. 예결산 부기명 통일 필요

연맹은 연초에 개최되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예결산의 심의·

의결을 실시하는데 20** ~ 20**년도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내용을 확인 하였을 때 동일 사업임에도 부기명이 각기 다른 사업이 있고 어떤 단체를 통해 보조금이 교부 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산악연맹장은

연맹은 각종 보조금을 비롯한 모든 예산에 지출원인해위 및 지출결의를 실시하고 회계지출 증빙서류가 잘 관리될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맞도록 해주시고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예·결산을 보고할때에는 부기명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각종위원회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산악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산악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은 「경기도산악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등에 따라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위원회, ●●●위원회 등 이사회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잘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겹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 본회의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기능에서 동일하게 수행하는 기능이 있고 심판의 역할까지 중복하여 운영되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산악연맹회장은

연맹은 각종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구성인원을 관리하고 본회 및 대한산악연맹의 기타규정을 참고하여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제·개정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